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3602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부산광역시철강판매업 협동조합
피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3. 24.
판 결 선 고	2016.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15. 5. 8. 취득세 등 1,272,638.100원을 0원으로 한 경정청구 및 2015. 5. 8. 취득세 등 1,875,971,880원을 0원으로 한 경정청구의 각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경위

1) 원고는 1988. 4.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1988. 5. 16.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이다.

2) 한국토지공사(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이하 'LH'라 한다)는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원에 있는 서부산유통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위 지구 내 유통시설용지 중 상류시설용지의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3) 원고는 2007. 12. 7. LH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대저2동 3146-1 대 43,879.4㎡(계약 당시 가분할 상태의 면적은 43,878㎡이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되, 매매대금 27,837,960,000원은 3년간 6회(계약보증금 별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부산 강서구 대저2동 3144 대 65,975.3㎡(계약 당시 가분할 상태의 면적은 65,950㎡이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되, 매매대금 41,020,900,000원은 3년간 6회(계약보증금 별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위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을 지급하다가 2011. 9. 30.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 합계 27,666,045,880원(면적정산한 원금 27,838,848,220원에서 선납할인금 172,802,340원을 공제),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 합계 40,781,997,740원(면적정산한 원금 41,036,636,600원에서 선납할인금 254,638,860원을 공제)을 각 모두 지급하였고, 2012. 3. 16.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취득세의 면제 및 면제받은 취득세의 자진납부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할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구 지방세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0조 제5항 제2호 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각 할부금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서부산유통지구 입주예정 조합으로 구성된 서부산유통지구 입주조합협의회는 2011. 3. 10., 2011. 3. 15. 부산광역시에 건축공사 준공 후 조합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조합원 명의로 분할 등기를 할 경우 조합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는 2011. 3. 18. 위와 같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고 회신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26. 원고의 개별 조합원들에게 각 2012. 11. 1.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1,272,638,110원을,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1,875,971,880원을 각 자진 신고하여, 2012. 12. 24.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취득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대상이고,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5. 이를 거부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4, 15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계법령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였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르면 '물류단시시설의 설치'만이 감면요건이지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은 면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원고는 위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는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하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직접 사용', '사용' 등의 규정이 없는 감면규정인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대한 추징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다. 피고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침과 달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으로써 과세형평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개별조합원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의 해당 토지 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이전등기를 해준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의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개별조합원이 분양을 받지 못하게 하고 조합 명의로만 분양받게 한 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 착공 신고를 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실시한 점을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호의 추징사유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감면요건 충족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시, 즉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 즉 각 할부금(연부금) 지급일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는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나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조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각 개별조합원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이 사용할 토지와 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공될 건물 부분을 미리 정해 그에 따라 분담금을 갹출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이를 이 사건 각 토지 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재산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신규 조합원도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② 개별조합원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와 같이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각자의 해당 부분을 자신들의 사업(물류사업)을 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6조의2는 "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라는 제목하에 같은 조 제2항에서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라는 제목하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문의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위 각 시행령 규정은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주체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지, 감면받는 주체를 한정하거나 확장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나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추징 요건 충족 여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적용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 취득세 면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 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법률인 구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 후 그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 등이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위 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률인 개정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등 참조).

나)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는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직접 사용'을 취득세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취득세에 대한 일반적 추징규정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를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행정안전부는 2011. 2. 8. 아래 [지침1]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지침을 시달하였고, 부산광역시는 같은 날 위 운영지침을 피고 등에게 통보한 사실, 이후 구 행정안전부는 2013. 3. 21. 아래 [지침2]와 같은 내용으로 위 운영지침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침을 다시 시달하였고, 부산광역시는 2013. 3. 25. 이를 피고 등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침1] 구 행정안전부의 2011. 2. 8.자 운영지침

○ 쟁점사항

구 지방세법에서는 감면규정에 개별적으로 추징요건이 단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분법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별적으로 감면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4를 준용하여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및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과 감면대상 물건을 '직접사용'토록 규정한 조항만 한정적으로 해당된다 할 것임

[지침2] 구 행정안전부의 2013. 3. 21.자 운영지침

○ 적용범위 관련 우리부 운영지침 내용

2011. 2. 8. 신설 추징규정의 운영지침 통보 : 감면조문에 개별추징규정이 없더라도 '직접사용'이 규정되어 있으면 신설된 추징규정(제94조)을 적용하되, 감면조문에 '직접사용'이 없는 경우 신설된 추징규정 적용 제외

○ 지침내용의 문제점 및 지침내용 조정

문제점 : 운영지침에서 적용범위를 '직접사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입법취지에 반해 적용대상 누락 발생

변경내용 : '직접사용'이 없더라도 종전에 '개별추징규정'이 있었던 조문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조문은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적용대상으로 지침 조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라)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일반적 추징규정이 적용되고, 그 적용이 과세형평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추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 구 지방세특례법 제71조 제2항는 부동산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고 이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특별히 추징이 규정된 것이 없다.

② 구 행정안전부의 2011. 2. 8.자 운영지침과 2013. 3. 21.자 운영지침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지침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위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고, 위 2011. 2. 8.자 운영지침이 되풀이 시행되는 등 실제 행정관행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오히려 피고나 피고의 상급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합명의로 보존등기 후 조합원에 이전할 경우 조합은 위 법 제94에 따라 추징대상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회신하였다.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구 지방세법상 개별감면조항의 추징규정을 일반화한 규정으로, 2011. 1. 1.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기 이전에 구 지방세법상 개별추징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행정안전부의 2011. 2. 8.자 운영지침은 그 적용대상을 '직접 사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로 한정함으로써 추징대상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13. 3. 21.자 운영지침을 통하여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그 해석을 변경하였다.

2) 추징요건 충족 여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 조합원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조합인 원고가 그 조합원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서 정한 매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LH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와 조합원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조합원들이 미리 분담비율에 따라 지급한 금원으로 갈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데(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의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서만 특례규정이 존재할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해당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인데, 같은 조 제1호와 달리 위 제2호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문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추징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아니라 LH가 분양한 것임은 물론, LH의 분양공고상 원고의 개별조합원들은 분양순위에서 후순위에 있을 뿐 분양신청이 금지된 것은 아니어서, 피고나 LH가 개별조합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받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매각함으로써 추징의 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기진석

판사 백상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⑥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 법 제280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끝.